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3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4월 2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 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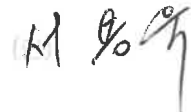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 규칙에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수익용기본재산 법정기준 및 법정수익률 미충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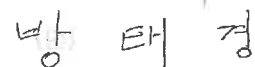
2024 년 4 월 2 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

감사 서 용 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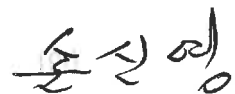


감사 방 태 경



피감사자 (입회인)

이 사 장 손 신 영

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3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대학교(국제대학교)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4 년 4 월 2 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

감사 서용욱 서용욱

감사 방태경 방태경

피감사자 (입회인)

사무처장 한봉희 한봉희

